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7월 8일, 백선회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7월 9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9.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8차 국방위원회(2025.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백선회의원)

최근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방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동시에 국가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기술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위험 요인을 수반함.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방지를 위한 기본적 보호체계를 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선제적 위험 식별 및 통제장치는 구체화 되어 있지 아니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위산업체의 경영이나 운영에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가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에 포함된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비한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점검을 의무화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의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글로벌 인재 활용과 방위산업 기술보호 간의 균형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서덕교)

- 현행법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선제적 위험 식별 및 통제장치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개정안은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비한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점검을

의무화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의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글로벌 인재 활용과 방위산업기술보호 간의 균형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함.

- 또한 관리계획서 및 계획이행 의무를 법률에 규정한다고 전제하면 관리 계획서의 작성의무 등은 대상기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대상기관이 자신의 권리·의무가 어떠한 범위에서 규율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관리 계획서의 내용 등도 법률에 규정하는 개정안이 바람직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률안심사소위원장 부승찬)

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관리 계획서 작성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